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DMC파크뷰자이(가칭)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현황		보육아동 (정원)	보육 교직원	비고
		연면적 (m ²)	규모			
(가칭)DMC 파크뷰자이 4단지 어린이집	가재울미래로 2 DMC파크뷰자이4단지 402동 1층 가재울4구역	119.165	지상1층	17명 (예정)	미정	

※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이 필요하며 보육정원, 교직원수, 개원일은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 2019. 12. 1. ~ 2024. 11. 30.(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나. 법인,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 개인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 영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라.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

4. 신청 제외대상

-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최근 5년이내 보육관련 법령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다. 공고일 기준으로 타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
- 라.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마.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바. 영리·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자
- 사.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아. 최근 5년이내에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서대문구 구립 어린이집 운영을 중도 포기한 자
- 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5. 신청서 접수

- 가. 공고기간 : 2019. 10. 4. ~ 2019. 10. 25. (20일 이상)
- 나. 접수기간 : 2019. 10. 21. ~ 2019. 10. 25. 18:00까지(단, 공휴일 및 휴무일 제외)
-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서대문구청 2층 여성가족과
-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제출(토일요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마. 제출서류

구분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 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input type="radio"/>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input type="radio"/>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등본			<input type="radio"/>	
공통 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부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u>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영유아보육법 제26조 각 호의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에 대한 계획서 및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반드시 포함] 및 예·결산서				
	• 자부담 승낙서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바. 제출부수 : 위탁신청서 및 심의 관련서류 16부

(원본 1부 제출 후 여성가족과 서류검토 완료 후 책자 15부 제출)

- 심사자료는 양면인쇄(쪽수표시), 목차 작성(평가항목 순서대로 정렬), 반드시 제본
- 첨부양식 중 서식(항목 등) 임의변경 금지, 글씨체 서울남산B로 반드시 통일
- 총페이지는 100 ~ 150 페이지 이내로 작성
- 발표자료(PPT)는 저장매체(USB)에 저장 및 출력(16부)하여 심사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

6. 위탁(운영)조건

- 가.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
- 나.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다. 어린이집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부담 능력과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 라.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장애인·시간연장·24시간·시간제·다문화 아동 보육 등)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마.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 원장 임용금지 및 대표자·관계자·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하며 개인의 경우 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함
※ 친·인척 : 직계존비속,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바. 개인 신청자의 경우 선정 결과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위탁 취소
- 사.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운영 위탁 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
- 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 자.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운영 위탁계약서」로 별도 체결

7.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 가. 심사항목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
- 나. 선정방법 :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선정(심사일 별도 통지)
- 다.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운영계획 설명과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 라. 결과발표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지
- 마.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단체·개인)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우리구와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단, 위탁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며, 향후 2년간 우리구 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에서 제외됨.

- 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2순위가 선정되었을 경우, 1순위가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순위를 위탁자로 결정·계약할 수 있음
※ 단, 2순위 선정은 70점 이상이라도 적격자가 있을 시에만 선정함.
- 사. 위탁체 신청자 중, 70점 이상 자 중에서 최고 점수자를 위탁체(자)로 선정하며, 위탁 심사결과 운영체(자) 모두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재모집 공고
※ 위탁체 신청이 1개라도 심의하며, 심의 결과 평균 70점미만이면 탈락 후 재모집 공고

8. 기타사항

- 가.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민·형사상 고발 조치
- 다. 신청서는 서대문구 홈페이지(www.sdm.go.kr) 고시 공고란에 공고문과 동시에 게재함.
- 라. (가칭)DMC파크뷰자이어린이집은 개원(예정)에 앞서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예산을 교부받아 기자재 구입, 교사 채용 등이 선행되어야 할 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 및 무상임대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마.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330-1687)로 문의 바람.